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요

-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김꽃임 의원 등 13명)
- 발의일자 : 2023년 4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 안 건 명 :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성 등(안 제4조 ~ 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안 제11조)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안 제12조 ~ 안 제13조)
- 예산 편성·집행(안 제14조)

4.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헌법과 법령 외에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물론 의회의 회의규칙이나 기타 운영 관련 규칙은 구속력을 가진 자치법규로서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됨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와 같은 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현행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입법형식이 조례가 아닌 규칙이라고 판단되나,
- 의회 운영의 편의와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자치법규로 조례 11개 시도의회, 규칙 5개 시도의회, 규정 1개 시도의회에서 규정하는 등 대부분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민의 신뢰도, 책임성 강화 등 대외적 효과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입법형식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 조문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주요내용과 같이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과 여비, 공무국외출장 제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사후 관리 등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허가권자 범위 확대(단서조항 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구체적 명시(신설),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 범위 확대(변경),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기한 확대(변경) 등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것으로
- 공무국외출장 허가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 공정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좀 더 계획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계획서 제출 기한을 좀 더 앞당기는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사료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5. 검토의견

- 현행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및 관심 등 대외적 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람직한 입법형식이라고 사료되고,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는 당초 의장이었으나,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공무국외출장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허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당초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서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로 국외출장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과, 『지방자치법』 규정상의 징계별(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구체적인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각각 규정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민의를 대표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위상과 지위에 걸맞는 책임의 의무를 부여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17개 시도의회 입법형식 등 비교표

시도의회	입법형식	조례(규칙) 제정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	출장계획서 제출일
서울	규칙	2022.01.13.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부산	조례	2019.05.29.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대구	규칙	2022.01.10.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인천	규칙	2019.07.08.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광주	조례	2019.06.01.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대전	조례	2019.06.28.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울산	조례	2019.12.26.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세종	조례	2012.09.30.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40일 전
경기	조례	2013.11.06.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40일 전
강원	규칙	2002.11.20.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충북	규칙	2007.12.14.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충남	조례	2001.03.30.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전북	조례	2020.07.01.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전남	조례	2016.01.07.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45일 전
경북	조례	2019.05.30.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경남	규정	2003.07.31.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제주	조례	2020.07.15.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출국예정일 30일 전

□ 현행규칙과 조례안(제정) 주요내용 비교표

구분	현행규칙	제정조례안
제3조 (허가권자)	<p>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단서조항 신설 ></p>	<p>(생략)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생략)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 ①항 신설 : 제척 ></p> <p>< ②항 신설 : 기피 ></p>	<p>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구분	현행규칙	제정조례안
<p>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p>	<p>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p>< ③항 신설 :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 구체적 명시 ></p>	<p>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p>③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p>
<p>제12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p>	<p>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u>출국 30일 전까지</u>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p>	<p>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u>출국 40일 전까지</u>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p>